



MINI Market Report

국가	카타르
제품	오리가공식품(오리훈제슬라이스)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CONTENTS

I. 카타르 마케팅 방안	1
1. 할랄 인증 획득 필요	1
2. 한국 식품 수입 관심 증대	2
II. 카타르 시장 정보	3
III. 카타르 유통 정보	5
1. 카타르 유통현황	5
2. 카타르 유통법규	6
IV. 카타르 통관 정보	7
1. 카타르 통관절차	7
2. 카타르 관세	10
V. 카타르 검역 정보	11
VI. 카타르 라벨링 정보	13

※ 참고자료

I 카타르 마케팅 방안

1. 할랄 인증 획득 필요

-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할랄 인증이 안 된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획득이 반드시 필요
 - 한국 기업들은 국내 한국이슬람중앙회(KMF)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카타르에서 할랄 인증으로 통용됨
 - 카타르나 요르단 같은 국가들은 할랄 인증 절차가 복잡한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편에 속함
- 한편, 한국 식품(축산)업체들도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및 시장진입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
 -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게 생산하여야 하며, 할랄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축산분야 할랄 인증 획득을 위해서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에 걸쳐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 종사자에게 보급해야함
- 현재 국내 도축장 및 가공공장의 HACCP 기준과 할랄 인증 기준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할랄식품 진출을 위해서는 도축장 및 가공공장은 전용라인을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단순 인증 발급에서 벗어나 JAKIM이나 MUI와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할랄 인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한 할랄 식품 시장의 축산분야 진출을 위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전략적으로 할랄 시장에 접근성이 용이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한국 식품 수입 관심 중대

□ 카타르 슈퍼마켓 관계자 인터뷰 내용

- 카타르 도하 시내에 3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보유한 FFC(Family Food Center)의 사업개발매니저 Luthra씨는 까르푸 같은 대형 하이퍼마켓이나 호텔을 비롯해 대기업의 회사급식을 위탁받은 케이터링 회사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유통을 담당
- 최근 한국 건설기업의 카타르 건설공사 수주가 늘어나자 한국 식품자재 수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정한 공급업체 발굴 및 품목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선 품목은 인구 구성이나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에 주목하고, Tilapia · Kingfish · Hamoor 등 냉동어류와 계란 · 치즈 같은 낙농제품, 과일류에도 관심을 보임
- 또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맺기보다는 1~2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함
- Luthra씨에 따르면 FFC의 작년도 한국식품류 판매액은 약 7만 달러이며, 인기 상품은 김치, 라면, 참기름,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였다고 함. 거주 한인 규모가 2,00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케이터링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올해 한국산 수입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함
- 참고로 아랍에미리트에는 한국 식품점이 4~5개 있고 수입통관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나 카타르의 경우 성분테스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존 유통기한도 엄격해 어려움이 많음
- 식음료의 경우 할랄 인증, 현지어 라벨을 부착해 통관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식품 위생법상 보존기간 1년 제품의 경우 잔여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이 되면 진열대에서 철거해야 함

II 카타르 시장 정보

- 오리훈제슬라이스는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으로 분류되며 가장 근접한 HS CODE는 「HS코드 1602.39-1000(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9-9000(기타)」로 파악되었음

< HS CODE >

1602.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9	가금류 기타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9.9000	기타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카타르 오리고기 수입동향

-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카타르의 2011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141톤이며, 수입 금액은 57만 7,000달러로 집계되었음

< 카타르 오리고기 수입통계 >

연도	오리고기 수입량 (tonnes)	오리고기 수입금액 (\$)
2002	1	10,000
2003	10	27,000
2004	6	15,000
2005	2,048	3,613,000
2006	1,174	1,821,000
2007	3,696	5,891,000
2008	25,942	51,556,000
2009	180	360,000
2010	16,994	27,856,000
2011	141	577,000

출처 : FAO (<http://faostat.fao.org/>)

-
- 카타르는 현재 오리고기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에 육류를 수입할 때는 할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III 카타르 유통 정보

1. 카타르 유통현황

- 소수 대규모의 카타르 기업이 판매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매상은 전체 식품 유통망의 25%만을 점유하고 있음
- EC Harris 보고서에 따른 카타르 유통시장 환경은 2013년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하며 14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앞섬. 특히, 인프라, 역량, 법률 부분에서 한국에 크게 앞선 점수를 기록함
 - 상위 10개국 중 대만, 일본을 제외한 국가가 미국, 호주 및 유럽국가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눈에 띄는 기록임
 - 최근 두바이 소재 대형 중국 유통상점인 'Dragon Mart' 카타르에 상륙함. Dragon Mart는 이러한 카타르 유통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대형 슈퍼마켓과는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카타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됨
- 카타르의 도하 시내에 3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보유한 패밀리푸드센터(FFC)의 2013년 한국식품류 판매액은 약 7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인기 상품은 김치, 라면, 참기름,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거주 한인 규모가 2,000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케이터링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올해 한국산 수입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 건설업체의 카타르 건설공사 수주가 늘어나면서 한국산 식품자재 수입에 관심이 있으나 적정 공급업체와 품목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선 품목은 인구 구성이나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에 주목하고, Tilapia · Kingfish · Hamoor 등 냉동어류와 계란 · 치즈 같은 낙농제품, 과일류에도 관심을 보임. 또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맺기 보다는 1~2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함
 - UAE에는 한국 식품점이 4~5개 있고 통관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지만 카타르는 성분

테스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존 유통기한도 엄격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카타르에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해 수입가격의 10-15%, 소매가격으로는 도매가격의 20-30%의 인상가격을 책정함

2. 카타르 유통법규

- 카타르 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 카타르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통해야 하지만, 카타르 군대나 경찰에 자본재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기업은 예외임
- 국내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반드시 '51%의 지분을 소유한 카타르 인' 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품은 재정경제부에서 카타르 인에게만 발급되는 수입승인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음
- 외국기업과 카타르 인이 독점대리계약을 맺을 경우 대리협정은 반드시 재정경제부의 상업등기를 하여야 함
- 대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중재 및 해결을 담당함. 하지만 외국기업의 결손적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카타르 상업 대리법에 따라 한 번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교체 변경은 불가능함
- 식음료의 경우 할랄 인증과 현지어 라벨을 부착해 통관에 대비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보존기간이 1년인 제품은 잔여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이면 진열대에서 철거해야 함
- 저장, 운송, 진열, 판매되는 모든 할랄 식품은 할랄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비할랄 물질과 분리되어야 함
- 운송차량 또한 할랄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생설비가 충족되어야 하며, 냉장보관 중에도 할랄 요구사항에 맞춰 유통을 시켜야 함

IV 카타르 통관 정보

1. 카타르 통관절차

- ☐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공증을 마친 신용장임
- ☐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함.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함
- ☐ 필요서류
 - 상세 세관신고서(Detailed Customs Declaratio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 계약증명서(구매, 임대, 대리인 계약서 등)
 - 비아랍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경우 아랍환적신고서
 -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수입 시 반출 신청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보건 증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 증서
 - 0% 방사성, 다이옥신, 시클라메이트 증명서
- ☐ 개인 수입업은 카타르 국적자 만이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카타르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이 할 수 있음
 - 법에 명시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카타르 국적자가 최소한 51%의 자본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허가되었고 수입 라이선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주재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카타르에 지사를 등록·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인 경우

□ 외국인은 유한책임회사(LLC),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로서 카타르 경제통상부에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후 수입 진행이 가능함

- 이 경우 수입업자는 물품을 증명할 수 있고 외국인 공급업자와 체결한 구매, 임대, 대리인협정서 등 합당한 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시함.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의 원본 요구 시 통관 후 90일 이내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 카타르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화물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COO,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 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상에 한국 주재 카타르 대사관 도장(Stamp)이 찍혀 있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이외에 아래의 금액이 수취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됨

□ Gulf Cooperation Council(GCC) 국가 (Saudi Arabia, Kuwait, Bahrain, Qatar, United Arab Emirates and Oman)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함하는 화물은 반드시 원본 직인과 원본 서명(잉크)이 있는 COO가 첨부 되어야함

□ 통관비용

- 통관 서류 합법화 비용: 약 70,000원(QR 250.00)
- 도착지 통관 관리 비용: 약 14,000원(QR 50.00)

□ 산업송장 수수료

송장 금액	인증료
1-5,000	100
5,001-15,000	200
15,001-50,000	500
50,001-100,000	900
100,001-150,000	1,300
150,001-250,000	1,800
250,001-500,000	2,200
500,001-1,000,000	3,000
1,000,001 이상	CIF 가격의 0.4%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수입장벽

- 수입절차상의 예외적인 장벽은 없지만, 카타르 항구에 수입물량 과부하로 인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입쿼타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은 없음

□ 제거 가능한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표기 불허 (2013년 1월 이후 적용됨)

- 기존 통관 규정 상 허용되던 기존 스티커를 이용한 원산지 및 제품정보 표기가 2013년 1월 이후 금지 및 기존 규정이 강화됨. 이는 카타르 정부가 모조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탈착이 불가능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 것임
- 생산지나 생산자를 표기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모조품임이 판명 시 즉시 압류됨

□ 카타르 세관은 모든 수입품의 HS Code를 반드시 수입업체의 상업등기 (Commercial registration, CR)와 수입 라이선스에 등록하도록 함. 이로 인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각각의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함

□ 카타르의 통관 규제는 2011년 5월부터 강화돼 대카타르 발송 물품(서류 제외)에 대한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송하인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레터 헤드, 각국의 카타르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며 주한 카타르대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물품 도착 후 카타르세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 시 최소 100 카타르 리얄에서 최대 송장금액의 0.4%를 책정, 주한 카타르대사관 인증 미비 시 카타르 현지에서 5%의 보증금 납입(90일 내 인증 획득 시 반환)

□ 제품의 상세 정보(수량, 무게, 부피)가 송장이나 선적서류와 불일치 시 통관이 거부됨.

2. 카타르 관세

- 카타르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관세장벽이 없음
- 2003년 1월부터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CET)에 따라 기준 관세율을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의 평균 5%로 책정(2010년 기준, 총 수입품의 93%에 5% 관세율 적용)
- 카타르는 사막국가 특성상 자체 생산이 어려운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상품, 국가 안보 관련 생산품, 민간항공 승객 소지 물품, 자선 물품, 선박, 정부발주 프로젝트 소요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는 면제함. 그러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요소(암모니아 류)는 각각 20%와 30%의 관세를 부과함
- 시사점
 - 2013년 통관법 강화에 대한 발표는 한국 기업에 통관 절차상 다소 불편함을 야기시켰지만, 현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원산지 표기 강화는 우리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 현지 언론에서 중국산 식품 위생 불안전 보도가 많아지자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황에서, 2013년 통관법 강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카타르 정부의 법·규정 등의 변경 내용이 수입업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는 선적 전 현지 바이어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V 카타르 검역 정보

- ☐ 모든 식료품은 국가표준 검사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 ☐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며, 불일치 적발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됨
- ☐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미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함
 -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주 내로 파기될 수 있음
- ☐ 카타르 음식점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 카타르 정부는 2009년, 음식점에서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담을 때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용기 및 신문지 등 프린트가 된 종이류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부터 시행함. 이는 플라스틱류의 성분이 되는 화학물질이 음식물에 침투해 체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 표기방식 명확화
 - 해당 용기는 음식물용으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뜨거운 음식물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의 경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포장할 때도 요구됨. 스티로폼은 차가운 음식물 포장시만 허용됨
- ☐ 건강 최고위원회의 합동식품 감시위원회와 함께 단속강화

-
- 식품 적합등급을 획득한 플라스틱 용기만이 뜨거운 음식물 포장에 사용될 수 있고, 종이컵과 박스는 금속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뜨거운 음식물 및 음료포장에 사용될 수 있음
 - 차가운 음식물 및 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은 아랍어와 영어로 차가운 음식 포장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하늘색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 ☐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됨

VI 카타르 라벨링 정보

- ☐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함.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하게 관련 법률이 강화됨
- ☐ 내무부 및 농무부, 보건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품에 수입상표 부착과 상품 규격이 표기되어야 하며, 특히 식료품에는 라벨링 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
 - 라벨에는 아랍어로 표기된 이름과 제조업자 주소, 생산일자 및 유효기간, 내용물, 성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첨가물로 사용되는 모든 지방류나 기름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모든 식료품의 진열기간은 카타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모든 식료품은 국가표준 검사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 ☐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되나,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음
- ☐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됨
- ☐ 만일 알코올 성분이 제품에 첨가되었다면, 반드시 라벨에 표기하여야 함. 또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재료를 사용하였다면 부수적인 재료로써 포함되었다고 표기하여야 함
- ☐ 생산일자/유통기한(P/E)
 - 생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 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함. 또한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남
- ☐ 라벨 표기 내용
 - 표기 언어: 아랍어/아랍어+영어
 - 상품명, 상호명

- 원사진
- 성분표(함유량에 따라 배열)
- 첨가물
- 동물성 지방 성분(ex, beef fat)
-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 제조자, 생산자, 배급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

☐ 유통기한 표기 형태

- Expiration date: (date)
- Use by: (date)
- Use before: (date)
- Sell by: (date)
- Fit fir: (duration) from the date of production

☐ 여러 개의 P/E 날짜는 허용되지 않음. 기본적으로 ‘월/년’ 형태로 표기하며 숫자와 글자 표기 모두 가능하지만 숫자 표기를 권유함.(August/2012보다는 8/2012로 표기) 세달 이내 정도로 품질 수명이 짧은 식품의 경우 ‘일/월/년’의 상세한 표기를 요구함

☐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음. 소금, 설탕, 향신료, 차, 쌀, 건조식품과 같이 품질 수명이 긴 식품의 경우 제조일자만 기입함.

☐ 보존기간이 정해진 식품의 경우 보존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기 이전, 수입 된 이후부터 최소 보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함

☐ 일반 상품에 대한 국제규격 인증 적용 및 우대 정책은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차량 수입의 경우는 Gulf specification의 적용을 받음

※ 참고자료

- 코트라 글로벌 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무역협회 www.kita.ne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
- 관세청 www.customs.go.kr
- Global Trade Atlas Navigator (GTA) <http://www.tradestatistics.com/gta/>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http://faostat.fao.org/>